

의안번호	제 25 호
------	----------------------

2020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윌일	2021. 3. 8.

2020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25호

제출연월일: 2021. 3. 8. 제 출 자: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2020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변경가결, 2020년 12월 09일)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0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안건 8건중 1건 변경

연번	사 업 명	소관부서	비고
1	물빛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전략사업실	변경
2	은진면 용산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관광체육과	
3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뉴딜경제과	
4	탑정호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및 전망시설 조성시업	미래사업과	

5	호국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미래사업과	
6	기호유교 문화체험	미래사업과	
7	연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전도로과	
8	강경 채산1리 공영주차장 및 쉼터	안전도로과	

○ 2020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m²,천원)

일련		재 산 표 시		カスカカ	취득	ろニハニ	н) ച
번호	구분	소 재 지	면적	기준가격	시기		비고
	사업별개요참조						

○ 2020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m²,천원)

일련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처분	처분사유	비고
번호	구분	소 재 지	면적	/ 正/ 一	시기	시판사ㅠ	H1 14
		해 당 없 음					

3. 2020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m²,천원)

		당 초				변경				
구분	사 업 명	면적		기준가격	면적			기준가격	비고	
		토지	건물	기타	7,21,1	토지	건물	기타	. / 2. / /	
	8건	42,145	5,358	3,480	27,596,831	40,341	5,358	3,480	27,979,122	
	물빛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3,868	2,177		6,926,244	2,064	2,177		7,308,535	변 경 대 상
	은진면 용신리 개이트볼장 조성사업	2,223			62,244	2,223			62,244	
	시회작경제 통합자원센터 조성사업		681		3,496,000		681		3,496,000	
취득	탑정호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및 전망시설 조성사업			3,480	7,900,000			3,480	7,900,000	
	호국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28,173	2,500		8,161,863	28,173	2,500		8,161,863	
	기호유교 문화체험 조성사업	3,425			321,909	3,425			321,909	
	연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628			584,924	2,628			584,924	
	강경 채산1리 공영주차장 및 쉼터 조성사업	1,828			143,647	1,828			143,647	
	0건									
 처분										
八正 										

4. 사업별 개요

□ 물빛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변경

■ 사업 개요

O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 현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교육 시설의 복합화 시설 기반 조성

- 용도 : 물빛 복합문화센터 건립(생활SOC복합화 사업)

※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O 사업기간 : 2020. 01. ~ 2022. 12.(3년)

O 사업위치

- 당초 :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495-6번지 외 2필지

- 변경 :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238-5번지 외 1필지

○ 소요예산 : 8,200,000천원(국비 10%, 도비 30%, 시비 60%)

(단위:천원)

총사업비	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 타	비고
8,200,000	1,300,000	6,520,000	300,000	70,000	10,000	

O 사업규모 : 부지면적 2,064㎡, 연면적 2,177㎡ (지하 1층, 지상 3층)

충	시 설	규 모	시 설 세 부			
	계	2,177 m²				
지상 1층	작은도서관	360 m²	테마북카페, 문학독서실, 시청각실 등			
지상 2층	생활문화센터	385 m²	주민자율공간, 창작실, 마을사랑방 등			
지상 3층	생활문화센터	365 m²	다목적홀, 교육실, 사무실 등			
지하 1층	주 차 장	1,067 m²	지하주차장			

O 취득대상 재산내역

- 변경 취득 대상 : 토지

(단위:m²,천원)

		당		초			변		경		
연	,	재 산 표 시	.]	키즈키커		7	대 산 표 시	.]	키고키거		비
번	지목	소 재 지	면적 (m²)	기준가격 (공시지가*면적)	용도	지목	소재지	면적 (㎡)	기준가격 (공시지가*면적)	용도	고
			3,868	26,244.4				2,064	408,535		
1	전	가야곡면 조정리 495-6	240	4,392	물빛	전	가야곡면 중연리 238-5	1,018	195,151	물빛	
2	임	가야곡면 조정리 495-8	3,190	14,099.8	복합 문화 센터	잡종지	가야곡면 중연리 238-6	1,046	213,384	복합 문화 센터	
3	전	가야곡면 조정리 495-1	438	7,752.6	건립					건립	

- 변경 취득 대상 : 건물

(단위:m²,천원)

લે મો	위치	기비	규모		사 않	計		비고
연번	T 1	지번	〒上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비 고
1	가야곡면 종연리	238-5 외 1필지	지하1층, 지상3층	6,900,000	1,012,000	2,480,000	3,408,000	위치변경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9. 08. :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사업계획서 제출

○ 2019. 09. : 생활SOC복합화 사업 '20년도 사업 선정(균형발전위원회)

○ 2020. 04.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심의 완료

○ 2020. 10. :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충청남도)

○ 2020. 12. : 사업부지 변경 보고

○ 2021. 02.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일상감사, 계약심사

○ 2021. 02. :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O 2021. 03. ~ 04. : 건축 설계공모 추진

○ 2021. 04. ~ 10. : 실시설계용역

○ 2021. 11. : 착공

O 2022. 12. : 준공

■ 위 치 도



■ 현황사진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 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중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